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03월 04일

회 사 명 : 삼천당제약(주)
대 표 이 사 : 김 창 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4-1
(전 화) 02-2046-1100
(홈페이지)<http://www.sc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장 태 은
(전 화) 02-2046-11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다행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03월 20일 금요일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향남읍 종합복지회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안건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 1호 의안 : 제65기(2008. 01. 01 ~ 2008.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문 참조)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제65기 배당은 현금 10%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9년 03월

삼천당제약(주)

대표이사 김 창 한(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A (출석률: %)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소화 (최대주주)	의약품판매	2008.01~2008.12	66	10.88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제약산업의 개요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특히 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제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우위에 따라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제품 생산구조는 소량·다품종의 생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제조공정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기술내용이 고난도이기 때문에 모방이 어려운 고도의 정밀화학산업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보전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다르게 안전성의 요구가 강하여 제품생산, 품질관리, 유통 등 전 과정에 있어 관련법의 규제가 타 산업에 비해 심한 산업으로, 사회에 많은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산업이다.

2) 제약산업의 발전

국내 제약산업은 60년대의 완제의약품수입시대, 70년대의 완제의약품 및 수입제 제화시대, 80년대의 공정도입 및 공정개발을 통한 완제품 국산화시대, 90년대의 독자적 공정개발을 통한 완제품 수출시대를 거쳐왔다.

1987년 물질특허 제도 도입 후 국내 상위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주력하여 1999년 SK케미칼의 항암제 '선프라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산신약 16종이 개발되었으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은 2007년도 6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국내신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2003년에는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글로벌 신약 1호가 되는 등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6년 세계 제약시장의 규모는 6,430억불로 전년대비 7%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9%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여 1조 3천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은 세계 인구의 고령화와 기술진보, 의료수요에 대한 욕구증가와 사회보장의 확대 추세에 기인한다.

국내의약품산업은 2006년 의약품 등 총생산액이 12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전년대비 8%이상 성장하였다.

국내의약품산업의 꾸준한 성장세는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의약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약품 생산활동의 증가로 의약품산업도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국내에서 완제의약품의 생산업체는 243개사이며 이들이 생산하는 품목수는 16,023품목 10조 4,5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7%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의약품이 2조 6,637억원으로 0.05%의 감소, 전문의약품은 7조 7,863억원으로 11.15%증가를 기록하며 완제의약품에서 차지하는 전문의약품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시장구조는 지속적인 기술혁신, 마케팅혁신에 따라 분화와 통합을 이루면서 기술력이 우위인 외자기업과 마케팅력이 강한 일부 대형 제약기업이나 대형 도매상의 성장이 예측되며, 최근에는 제네릭의약품의 높은 성장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제약기업은 GMP 국제수준향상, 미국과의 FTA 협상타결,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규제 강화 및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측된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서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으며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의 경우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나 전문의약품(Ethical Drug)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경쟁요소

지금까지 국내 제약산업은 고부가치 및 지식기반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하고 연구개발능력의 취약성을 보이며 단순 제네릭의약품 중심으로 내수판매가 90%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 및 중복생산을 많이 함으로써 기술집약적이기 보다는 영업 및 마케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현재의 상황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직접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GMP 국제수준향상에 따른 시설투자비용의 증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재평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중장기적인 신약 개발력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능력이 없고 영세한 국내 중소 제약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5) 자원조달성의 특성

제약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원료합성의 새로운 공정 및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가 상당히 진전을 보였으나, 물질특허 제도 도입으로 신제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에 따른 수익성 변동요인이 크다. 또한 제약산업은 노동력의 수급이 비교적 원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제약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므로 제품의 생산, 품질관리, 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있어 타 산업에 비해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 우수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GLP) . 우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 우수원료의약품관리기준(BGMP)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가(보험약가) . 실거래가 상환제도 . 약가재평가제 . 제조물책임법(P/L) .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LS)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약대체조제인센티브 . 신약개발 자금지원 . G7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 등) . 기술인력지원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영업개황

1. 순 매출액 : 606억 (전년 동기 대비 8.25% 증가)
2. 매출총이익 : 403억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
3. 영 업 이 익 : 75억 (전년 동기 대비 4.61% 감소)
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억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
5. 당기순이익 : 61억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의약품 약제품 제조 판매"

당사는 의약품 약제품 제조 판매를 지배적 단일사업부문만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공시대상 요건을 갖춘 사업부문이 없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2007년	2006년	2005년
삼천당제약	56,021	47,509	52,572
경동제약	76,219	77,208	67,858
안국약품	64,128	61,110	58,480
대한약품	45,838	41,391	37,938
고려제약	32,902	29,776	29,005
조아제약	21,992	19,207	19,730

※ 자료제출처 : 매출자료는 업체별 전자공시자료.

(3) 시장의 특성

의약품은 경미한 질병의 치료나 예방차원에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과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Ethical Drug)으로 구분되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줄고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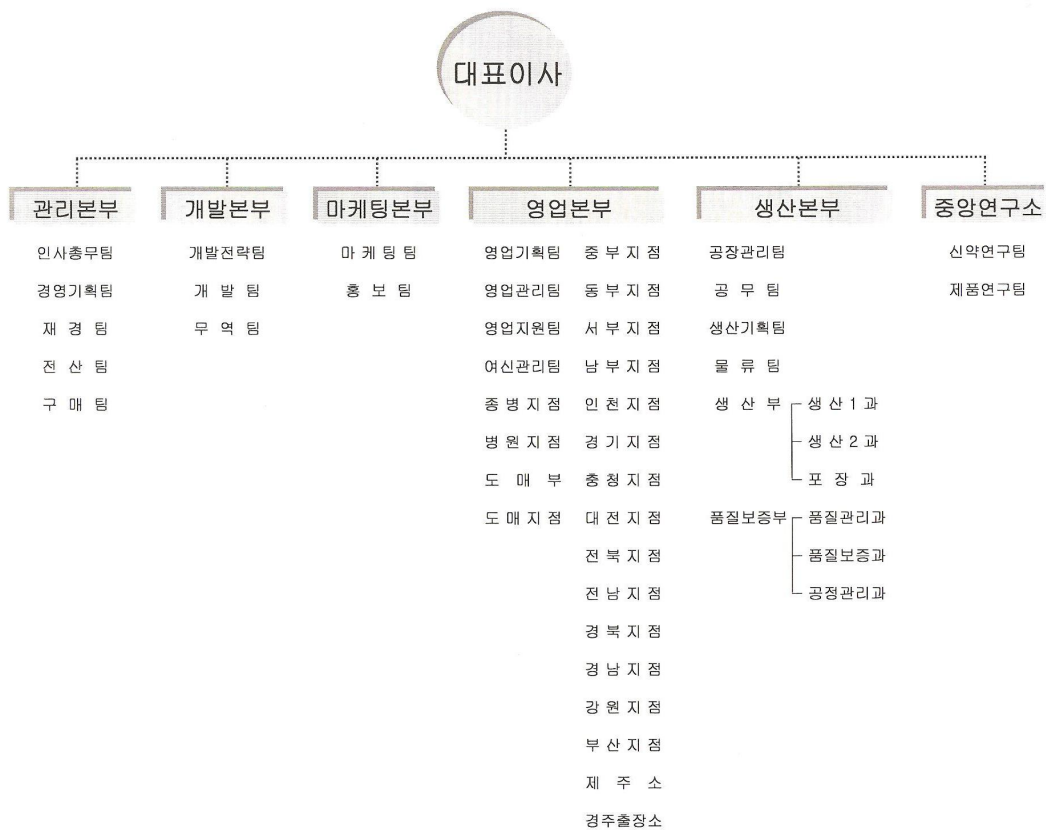
전반적인 의약품 시장은 평균수명 연장, 노인인구의 증가, 신종질병, 개도국·제3세계의 발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신약개발에 따른 의약품 수요의 창출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실시로 일반의약품시장은 다소 침체가 있고, 전문의약품 시장은 참여업체의 증가와 품목수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되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더욱 치열해 지는 취약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는 신약개발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다수 획득하였으며, 항생제, 순환기계, 안약류 등의 제품뿐 아니라 QOL(Quality Of Life)제품군의 적극적인 시장참여 및 국내·외 업체들과 기술제휴를 통한 신제품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신규사업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2009년에는 순환기계 실리디핀정 외에 새로운 품목 11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R&D투자와 제품 집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특화 제품을 개발·육성하여 제약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 내용 중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65 기 2008. 12. 31 현재

제 64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5(당) 기		제 64(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I.유동자산		56,690,784,102		53,015,393,225
(1)당좌자산		46,503,312,298		47,032,691,703
1.현금및현금성자산	5,920,643,829		4,603,565,924	
국고보조금	(40,000,000)		-	
2.단기투자자산	7,287,539,801		9,200,000,000	
3.매출채권	29,335,324,366		30,048,046,711	
대손충당금	(488,490,112)		(715,105,095)	
4.미수금	3,147,036,500		3,475,318,380	
5.미수수익	74,436,729		313,584,518	
6.선급금	802,978,554		73,447,881	
7.선급비용	34,126,700		33,833,384	
8.유동이연법인세자산	429,715,931		-	
(2)재고자산		10,187,471,804		5,982,701,522
1.상품	1,035,185,742		409,935,821	
2.제품	5,908,665,134		3,706,599,236	
3.재공품	1,376,036,132		682,289,231	
4.원재료	1,557,238,425		826,838,872	
5.저장품	199,166,962		321,556,280	
6.미착품	111,179,409		35,482,082	
II.비유동자산		29,011,514,559		31,205,033,803
(1)투자자산		2,534,438,272		5,651,767,375

1. 장기금융상품	5,000,000		5,000,000	
2. 매도가능증권	2,266,039,272		5,419,837,375	
3. 출자금	116,469,000		80,000,000	
4. 기타투자자산	146,930,000		146,930,000	
(2)유형자산		23,794,591,885		22,947,075,184
1. 토지	11,649,001,888		11,649,001,888	
2. 건물	13,208,614,907		11,517,018,807	
감가상각누계액	(4,043,867,850)		(3,177,882,515)	
3. 구축물	1,395,602,269		942,602,269	
감가상각누계액	(359,997,781)		(290,311,665)	
4. 기계장치	6,069,075,845		5,137,265,186	
감가상각누계액	(5,117,919,885)		(4,532,700,299)	
5. 차량운반구	274,075,604		297,431,784	
감가상각누계액	(236,776,310)		(250,247,684)	
6. 공구와기구	3,129,952,772		2,580,515,765	
감가상각누계액	(2,510,134,687)		(2,013,627,695)	
7. 비품	2,261,486,535		2,028,336,309	
감가상각누계액	(1,924,521,422)		(1,585,326,966)	
8. 건설중인자산	-		645,000,000	
(3)무형자산		1,348,481,231		1,414,219,044
1. 산업재산권	77,541,227		105,250,104	
2. 개발비	1,399,151,980		1,648,716,871	
국고보조금	(128,211,976)		(339,747,931)	
(4)기타비유동자산		1,334,003,171		1,191,972,200
1. 임차보증금	1,154,600,000		1,024,600,000	
2. 예치보증금	176,522,200		167,372,200	
3.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2,880,971		-	
자 산 총 계		85,702,298,661		84,220,427,028
부 채				

I.유동부채		11,905,674,748		13,712,655,890
1.매입채무	2,060,689,869		1,676,162,606	
2.구매자금대출	1,075,650,294		2,184,823,085	
3.미지급금	2,861,488,427		3,188,066,513	
4.선수금	166,101,224		98,039,082	
5.예수금	121,958,943		115,427,148	
6.미지급비용	664,559,970		93,468,704	
7.미지급법인세	1,760,222,704		2,895,677,831	
8.반품추정부채	3,195,003,317		2,830,789,839	
9.유동이연법인세부채	-		630,201,082	
II.비유동부채		2,051,644,478		2,404,372,992
1.퇴직급여충당부채	4,676,789,522		4,027,286,913	
국민연금전환금	(25,765,060)		(29,547,950)	
퇴직보험예치금	(2,859,379,984)		(2,443,787,526)	
2.예수보증금	250,000,000		310,000,000	
3.국고보조금	10,000,000		-	
4.비유동이연법인세부채	-		540,421,555	
부 채 총 계		13,957,319,226		16,117,028,882
자 본				
I.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1.보통주자본금	10,000,000,000		10,000,000,000	
II.자본잉여금		11,988,586,664		11,988,586,664
1.주식발행초과금	8,775,461,466		8,775,461,466	
2.자기주식처분이익	3,213,125,198		3,213,125,198	
III.자본조정		(1,988,326,610)		(1,988,326,610)
1.자기주식	(1,988,326,610)		(1,988,326,610)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54,965,753)		483,815,037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4,965,753)		483,815,037	
V.이익잉여금		51,799,685,134		47,619,323,055

1.이익준비금	1,374,652,240		1,181,652,240	
2.기업합리화적립금	1,283,272,767		1,283,272,767	
3.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4,000,000,000		5,100,000,000	
4.사업손실준비금	4,000,000,000		7,800,000,000	
5.미처분이익잉여금	41,141,760,127		32,254,398,048	
자 본 총 계		71,744,979,435		68,103,398,1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5,702,298,661		84,220,427,028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65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64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5(당) 기		제 64(전) 기	
		금 액		금 액
I.매출액		60,644,557,381		56,021,299,626
1.국내매출액	58,999,659,906		54,382,314,480	
2.수출액	1,376,028,475		1,524,112,146	
3.임대매출액	268,869,000		114,873,000	
II.매출원가		20,308,327,360		18,441,918,891
1.기초재고액	4,116,535,057		3,906,029,267	
2.당기제품제조원가	26,279,550,300		21,158,968,348	
3.매입할인	(1,597,272,300)		(803,016,814)	
계	28,798,813,057		24,261,980,801	
4.타계정대체액	(1,546,634,821)		(1,703,526,853)	
5.기말재고액	(6,943,850,876)		(4,116,535,057)	
III.매출총이익		40,336,230,021		37,579,380,735
IV.판매비와관리비		32,809,423,245		29,689,121,046

1.급여	8,569,234,840		7,820,084,670	
2.퇴직급여	988,503,218		740,569,026	
3.복리후생비	869,502,606		802,634,462	
4.여비교통비	2,952,909,814		2,621,029,353	
5.통신비	128,288,884		136,335,538	
6.수도광열비	65,623,344		62,836,709	
7.세금과공과	459,066,366		433,140,552	
8.지급입차료	120,082,753		185,358,941	
9.감가상각비	808,178,911		750,344,575	
10.수선비	122,277,929		230,290,564	
11.소모품비	167,427,693		130,624,326	
12.보험료	6,856,172		16,823,783	
13.접대비	957,105,548		813,717,191	
14.광고선전비	5,126,367,010		4,909,512,935	
15.건본비	475,398,815		516,169,254	
16.도서인쇄비	73,050,287		47,177,259	
17.교육훈련비	1,063,023,221		861,697,647	
18.차량유지비	47,262,390		53,306,491	
19.지급수수료	1,179,836,915		1,030,304,199	
20.경상개발비	914,915,091		741,346,871	
21.운반비	309,340,400		290,033,400	
22.수출제경비	43,034,281		36,621,244	
23.영업장려비	381,982,640		340,201,440	
24.회의비	1,036,475,490		817,056,187	
25.판매비	4,052,956,562		3,385,241,793	
26.시장개척비	1,125,691,006		931,920,803	
27.대손상각비	283,988,559		391,579,000	
28.무형자산상각비	481,042,500		593,162,833	
V.영업이익		7,526,806,776		7,890,259,689

VI. 영업외수익		2,538,052,041		1,617,149,325
1. 이자수익	1,449,318,319		1,229,635,455	
2. 배당금수익	27,900,000		28,900,000	
3. 수입수수료	583,560,000		-	
4. 외환차익	155,329,977		4,702,216	
5. 외화환산이익	25,141,480		-	
6.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41,014,925		-	
7.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		17,737,809	
8. 투자자산처분이익	124,035,300		-	
9. 유형자산처분이익	10,816,182		23,995,620	
10. 잡이익	120,935,858		312,178,225	
VII. 영업외비용		1,666,264,167		1,327,345,895
1. 이자비용	160,130,868		134,268,979	
2. 외환차손	27,378,832		8,907,429	
3. 외화환산손실	10,242,040		177,461	
4. 기부금	330,717,000		21,288,344	
5. 채고자산감모손실	1,078,111,240		1,129,161,546	
6.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54,660,728		-	
7. 유형자산처분손실	-		1,185,309	
8. 잡손실	5,023,459		32,356,827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98,594,650		8,180,063,119
IX. 법인세비용		2,288,232,571		2,205,764,075
X. 당기순이익		6,110,362,079		5,974,299,044
X I. 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317		300
2. 희석주당순이익		317		30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5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64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5(당) 기		제 64(전) 기	
	금 액		금 액	
I.미처분이익잉여금		41,141,760,127		32,254,398,048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031,398,048		26,280,099,004	
2.당기순이익	6,110,362,079		5,974,299,044	
II.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5,300,000,000		4,900,000,000
1.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300,000,000		1,100,000,000	
2.사업손실준비금	4,000,000,000		3,800,000,000	
III.이익잉여금처분액		1,061,500,000		2,123,000,000
1.이익준비금	96,500,000		193,000,000	
2.배당금	965,000,000		1,930,000,000	
가.현금배당	965,000,000		1,930,000,000	
(주당배당금(율))				
(당기 : 50원(10%))				
(전기 : 100원(20%))				
IV.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5,380,260,127		35,031,398,048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65 기(안)	제 64 기
주당배당금(원)	50	100
시가배당율(%)	2.5	3.5

※ 상기내용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p> <p>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6.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신 설></p> <p>③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제10조의2(일반 공모 증자 등)</p> <p>①~ ④ (생략)</p> <p>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p>	<p>제10조 (신주인수권)</p> <p>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u>주식</u>을 우선배정하는 경우</p> <p>3. <u>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u>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삭제></p> <p>①~ ④ <삭제></p> <p>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법률 개정 반영 및 제10조의2 제1항의 일반공모증자한도를 본호에서 함께 규정함</p> <p>자구 수정</p> <p>법률 개정 반영</p> <p>표준정관반영, 자구 수정</p> <p>표준정관반영, 자구 수정</p> <p>용어변경 반영</p> <p>제10조의2 제4항에서 수정</p> <p>이관</p> <p>조문번호변경 및 자구 수정</p> <p>일반공모증자한도를 제10조 제2항 제1호에 함께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함</p> <p>법률 개정 반영 및</p>

<p>의4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u>증권거래법상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에게</u>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u>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u>에게는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신 설></u></p> <p>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⑥ (생략)</p> <p>⑦ ~ ⑧ (생략)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u>에게는 <u>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u></p> <p>⑤ 회사는 <u>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u></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⑦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 <삭 제></p> <p>⑧ ~ ⑨ (현행과 같음)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u>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u> 1. 주식매수</p>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법률 개정 반영 및 제3항 하단일부를 제10조의3 제4항으로 신설 이관함</p> <p>법률 개정 반영 및 제10조의3 제3항 하단 일부를 수정 이관함</p> <p>표준정관반영, 자구 수정, 조문번호변경</p> <p>표준정관반영, 자구 수정, 조문번호변경</p> <p>법률 개정 반영 조문번호변경 조문번호변경 및 자구 수정</p>
---	--	--

<p>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p> <p>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생략)</p> <p>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 설></p> <p>② ~ ⑤ (생략)</p>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정관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 ~ ⑤ (생략)</p> <p>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생략)</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u>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u>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집통지</u>에 같음할 수 있다.</p> <p>③ 이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u>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u>에는 <u>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u>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p>	<p>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u>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u>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p> <p>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u>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u>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동아일보에 <u>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u>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소집통지</u>에 같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u>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u></p>	<p>자구 수정</p> <p>전환사채의 제3자배정의 목적, 대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함</p> <p>자구수정</p> <p>일반공모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한도 정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배정의 목적, 대상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예시함</p> <p>법률 개정 반영 및 자구 수정</p> <p>법률 개정 반영, 자구 수정</p>
--	---	---

<p>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2항이 규정 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p>	<p>인 경우에는 <u>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u> 그밖에 <u>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u>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u>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u>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u>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9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법률 개정 반영, 자구 수정</p> <p>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에 의한 조문변경</p>
<p><부 칙></p>	<p>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p>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창한	1949.09.15	-	없음	이사회
장태은	1961.12.24	-	없음	이사회
홍기종	1954.10.20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창한	삼천당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주)DAE WOO International	없음
장태은	삼천당제약(주)	동양기전(주)	없음

	경영지원실장		
홍기종	법무법인양현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건중	1952.10.19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황건중	삼천당제약(주) 감사	(주)에임즈아이티 이사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	4(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	1,5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	10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